

2022년 울산광역시 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용자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용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8.

울 산 광 역 시 장

1. 용자규모 : 200억원(은행협조 용자)

※ 중소기업/기술혁신/경영혁신형 자금

☞ 은행협조 용자: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2.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3.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분류번호 C)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참고 1】
 -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무역업 고유번호 부여기업)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울산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업종별 지원한도 잔액이 남아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연장용)
- 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융자추천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상 지원받은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 건설업 제외(단. 산업 생산시설 건설, 환경설비 건설, 조경 건설, 냉난방 공사, 전기통신공사,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 등은 지원가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4. 융자한도 : 업체당 4억원 이내

(단,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은 5억원 이내)

-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매출액의 1/4이내

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자금은 보증지원 가능금액 이내

※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매출액 산정

5. 대출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는 융자기관의 융자금리 적용

6. 울산시 기업체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3%이내)

- 단, 대출차주는 1%의 대출이자를 필수적으로 부담하여야한다.(울산광역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차주가 부담할 대출이자가 1% 이하인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1%가 되도록 보전율을 감액한다)

구 분	2년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1회 용자 신청업체	2.5%	2.5%	1.7%
2~3회 용자 신청업체	2.0%	2.0%	1.45%
4회 이상 용자 신청업체	1.5%	1.5%	1.2%

※ 아래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0.5% 가산

- 울산광역시 산업대상 및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市 지정 친환경기업
-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에 한함)
- 타·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여성기업 확인증, 장애인증명서, 인증서 구비)
- * **명의만 장애인 또는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지정서 구비)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센터 확인증 구비) 【참고 5】
- 울산광역시 일자리창출 우수 강소기업(인증서 구비)

7. 지원결정 취소대상(※ 매년 반기별 자금사용처 조사실시)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기타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2. 9. 26.(월) ~ 9. 30.(금)
- 신청장소 : 울산경제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 (북구 산업로 915, 1층)
- 구비서류 ※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경우만 인정
 - 용자신청서 원본 1부 【붙임 1】
 - 자금사용계획서 원본 1부 【붙임 2】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 【붙임 3】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원본 1부 【붙임 4】
 -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서류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최근 3년)
 - ※ 2020년~2021년 분은 해당 연도 12월 분만 제출, 2022년 분은 월별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
-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사본 1부
- 가점(인증·지정, 수상, 우대, 특허권, 사회공헌도) 확인서류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참고 6】추천대상업체 평가항목 참조
-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해당업체에 한함) 사본 1부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사내협력업체 제외)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계약서

9. 기타사항

- 기업체 임직원 외 업무대행 금지(용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용자추천 결정: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청기간 내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항목【참고6】에 의한 평점이 높은 업체순 추천
- 대출취급은행 : 13개 금융기관(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시 안내
- 대출취급기한 : 용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규칙에 의함

☞ 문의 및 상담

- 울산경제진흥원(<http://www.uepa.or.kr>) : ☎ 283 - 7135, FAX 700 - 7139

【붙임서식 1】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2022년)

접 수 번 호	기업성장팀-	접 수 일	
신청자금명	☐ 중소기업 ☐ 기술혁신 ☐ 경영혁신형 ☐ 조선사내협력사 ☐ 자동차 업종		

※ 신청자금명에 “√” 표기 하시면 됩니다.

신청업체 현황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주민(법인)번호	-
업 태		종 목	
전 화 번 호	() -	팩 스	() -
휴 대 전 화	- -	종 업 원 수	(상시 근로자) 명
도 로 명 주 소			
담 당 자	성 명	이 메 일	
	직 책	휴 대 전 화	- -

대출가능여부 확인

상담기관명	대출(보증)예정금액	희망 대출(보증)조건	상담기관 담당자 확인
은행 지점	백만원 ()신용, ()담보, ()보증서	2년 거치 일시상환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직 위: 연락처: 성 명: (인)
보증기관명 :	백만원	2년 거치 일시상환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직 위: 연락처: 성 명: (인)

※ 먼저,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방문하여 대출금액을 확인받습니다. 이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상담기관 담당자는 대략적인 대출(보증) 가능여부를 작성하시면 되며 이에 대한 이행책임은 없습니다.

우대기업 확인

벤처	여성	전입	장애인	시산업대상 공예품대전	시지정 친환경	가족친화	창조경제 혁신센터 특화산업	일자리창출 우수 장소

※ 해당되는 우대기업 여부에 “√” 표기 하시면 됩니다. (없을 경우 미기재)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체크	제출서류	형태	부수	설 명
	자금사용계획서	원본	1	소정양식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	“대표자 및 담당자 한하여 인정”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3년, '20~'22)	사본	1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발급하여 제출
	최근 1년 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사본	1	
	이차보전우대기업 확인서류	사본	1	“ 해당업체에 한해 제출 ”
	가점 (인증, 수상, 우대, 특허권, 사회공헌도) 확인서류	사본	각 1	
	사업장 확인서류(사내협력사 증빙서류)	사본	1	-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임대계약서 등 - 도급계약서, 임대계약서 등

※ 상기 신청서는 울산경제진흥원의 관리자료로 활용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붙임과 같이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

울 산 경 제 진 흥 원 장 귀 하

【붙임 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업 체 명		대 표 자	
신청금액	일금 원정(₩)		
자 금 사 용 처			
※ 실제 계좌입금 후 계좌이체(또는 인출)되어 소요되는 항목을 작성 (예) 인건비 - 1,200만원, 원자재구매 - 5,000만원			
《유 의 사 항》			
1. 자금대출 후 자금사용처 확인, 기업체 방문 등 사후관리 ○ 대출 후 6개월 이내 대출금 사용내역 통보(경제진흥원 FAX: 700-7139) ○ 대출금 입금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기타관련 증빙서류 첨부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 등 관련법규에 저촉될 경우 이차보전금 회수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2.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휴·폐업일 이전까지 이차보전금 지급 3. 자금대출 후 사업장 소재지변경, 대표자변경, 상호변경, 휴·폐업 등 변동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신고(변동사항 발생 후 14일 이내) ※ 공장 신·증·개축비, 부동산(공장, 부지)매입비, 기계장치구입비 등의 시설투자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u>확인</u> 하였으며, 위반사항 발생 시 지원중단 및 기 지원금 환수절차에 <u>동의</u> 합니다. (자필 작성) 신청인 ㉠			

【붙임 3】

개인(법인)정보 수집 동의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_____은(는) 울산경제진흥원의
개인(법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법인)정보 항목

- 업체현황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담당자 부서명 · 직책 · 전화번호
- 대출가능 여부확인 : 상담기관 담당자, 상담기관 담당자 연락처
- 우대기업 확인 : 여성기업 유무, 전입전후사항, 장애인 등록증 등

2. 사용목적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접수 및 심사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추천 및 추천서 발급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사후관리를 위한 자금지원 기관 간 정보공유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변경사항신청 관리

3. 동의서 유효기간

이 동의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업무처리 기간동안 유효하며 개인(법인)정보
처리 거부권 행사시 효력도 소멸됩니다.

4. 확인사항

개인(법인)정보 수집 동의 관련하여 울산경제진흥원의 개인(법인)정보 처리방침
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인지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본인성명 _____(날인 또는 서명)

【참고 1】

제조업관련서비스업

493 도로화물 운송업

501 해상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92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3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76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01 하수 및 폐수처리업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90 환경정화 및 복원업

3401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3402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수리업

지식기반산업

- 메카트로닉스 산업, 카엘드로닉스 산업, 정밀기기 산업, 항공기 우주산업, 신소재산업
- 생물, 의약, 환경산업, 정밀화학, 신에너지
- 통신기기산업, 컴퓨터산업, 반도체산업, 디지털가전

지식서비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7 소매업(주류, 담배소매업 제외)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58 출판업(불건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외)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60 방송업

612 전기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3 사진촬영 및 처리업

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21 여행사업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1 사무지원서비스업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참고 2】

기술혁신기업

-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중소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이노비즈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미만 아래 해당기업
(단,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업력제한 없음)

분 야	해 당 기 업	세 부 내 용
신기술 제조업	기술보증기금의 현장조사시 신기술사업자로 확인된 제조업	○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을 개선하는 기업 ○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는 기업 ○ 연구성과를 기업화 또는 제품화하는 기업 ○ 기술협약에 의거 제품 및 공정개발하는 기업 ○ 기타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녹색성장 창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 녹색성장산업
지식문화 창업	지식문화산업(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 (지식기반 제조업) 정밀화학,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통신기기, 신소재, 우주항공 등 <산업발전법 제5조를 기초로 선정> ○ (지식기반 서비스업)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선도콘텐츠산업, 일반콘텐츠산업
이공계 챌린저 창업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이공계 출신자로서 만 45세이하인 기업	○ 신기술사업자
40·50 창업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만 40 ~ 만 55세 이하이고, 동업계 경력 10년 이상인 기업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선도콘텐츠산업, 일반콘텐츠산업
1인 창조기업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영위하는 기업(다만, 상시근로자 없이 4인 이하가 공동창업, 공동대표 등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신기술 사업자
첨단·뿌리산업 창업	첨단기술·제품 확인기업 및 뿌리산업 영위기업	○ (첨단산업) 나노융합, 디스플레이 등 지식경제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의한 첨단기술·제품 확인기업 ○ (뿌리산업) 중소기업청 선정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열처리·표면처리·소성가공) 영위기업

【참고 3】

제4차 산업혁명 영위기업

- ‘신성장 공동기준’의 9개 테마의 *품목(기술)인 경우
- 항목 1~3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각 항목별 1개 이상의 판별요건 충족)

항목	판 별 요 건	판 단 기 준	
1	신성장산업 테마	분 야	품 목*
	①첨단제조·자동화		
	②화학·신소재		
	③에너지		
	④환경·지속가능		
	⑤건강·진단		
	⑥정보통신		
	⑦전기·전자		
	⑧센서·측정		
	⑨문화·콘텐츠		
2	①초연결성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간 등의 네트워크 연결 여부	
	②초지능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과 연관 여부	
	③융합성	기존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 여부	
3	①신사업창출	기존에 없던 사업의 창출 및 서비스 구현 여부	
	②신시장창출	기존에 기대하기 어려운 신규시장에 진입 또는 기존에 없던 시장 창출 여부	
	③시너지창출	2개 이상 개별 기술의 융합으로 시너지 창출 여부	

【참고 4】

경영혁신형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미만 유망창업기업 및 기술·지식기업 중 아래 해당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분 야		해 당 기 업																		
유 망 창 업 기 업	전문자격 창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자격증과 관련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대학 교수* 또는 박사이거나 대학 및 상장법인 부설연구소등에서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관련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창업일로부터 과거 3년 내에 제조업 또는 프로그램 제작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생산직, 전문직, 기술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관련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이디어 창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창업경진대회(유사 명칭 포함) 수상기술로 창업(예정)한 기업이거나, 창업경진대회(유사 명칭 포함) 수상경력이 있는 기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나 기업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보유하거나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예정) 하는 기업 ■ 창조경제 혁신센터 등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추천기업																		
기술·지식 기업		<table><tr><td>■ 차세대 성장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td></tr><tr><td>■ 기술력 및 기술집약도가 높은 기업</td></tr><tr><td>- 기술력 인정기업</td></tr><tr><td>- 부품·소재전문기업</td></tr><tr><td>-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개발과제 참여기업</td></tr><tr><td>- 세계일류 상품 생산기업</td></tr><tr><td>-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td></tr><tr><td>- 기술개발 관련자금 배정기업</td></tr><tr><td>- 기술관련 인증기업</td></tr><tr><td>- 집적시설 입주기업</td></tr><tr><td>-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참여 중소기업</td></tr><tr><td>■ 사업타당성 검토서 또는 기술평가서 보유기업</td></tr><tr><td>■ 「서비스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유망서비스 부문 대상 업종 영위기업</td></tr><tr><td>■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td></tr><tr><td>■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td></tr><tr><td>■ 뿌리산업 영위기업</td></tr><tr><td>■ 지식기반기업 영위기업</td></tr><tr><td>■ 지식자산평가등급 GR-5 이상 또는 기술자산평가등급 TR-5 이상인 제조업 영위 기업</td></tr></table>	■ 차세대 성장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기술력 및 기술집약도가 높은 기업	- 기술력 인정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개발과제 참여기업	- 세계일류 상품 생산기업	-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	- 기술개발 관련자금 배정기업	- 기술관련 인증기업	- 집적시설 입주기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참여 중소기업	■ 사업타당성 검토서 또는 기술평가서 보유기업	■ 「서비스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유망서비스 부문 대상 업종 영위기업	■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뿌리산업 영위기업	■ 지식기반기업 영위기업	■ 지식자산평가등급 GR-5 이상 또는 기술자산평가등급 TR-5 이상인 제조업 영위 기업
■ 차세대 성장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기술력 및 기술집약도가 높은 기업																				
- 기술력 인정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개발과제 참여기업																				
- 세계일류 상품 생산기업																				
-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																				
- 기술개발 관련자금 배정기업																				
- 기술관련 인증기업																				
- 집적시설 입주기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참여 중소기업																				
■ 사업타당성 검토서 또는 기술평가서 보유기업																				
■ 「서비스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유망서비스 부문 대상 업종 영위기업																				
■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뿌리산업 영위기업																				
■ 지식기반기업 영위기업																				
■ 지식자산평가등급 GR-5 이상 또는 기술자산평가등급 TR-5 이상인 제조업 영위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 선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참고 5】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

○ 아래 분야 해당기업으로 센터 확인증 소지기업

- 조선해양플랜트(에코십, 스마트십)
- 지역특화 3D프린팅 산업
- 첨단의료자동화산업
- 안전산업

【참고 6】

추천대상 업체 평가항목

1. 평 점 (100점)

① 매출액 : 매출액이 영세한 기업 우선

항 목			점수	비 고
매출액	제조업	10억 미만	20점	
		20억 미만	16점	
		50억 미만	12점	
		100억 미만	8점	
		100억 이상	4점	
	비제조업	5억 미만	20점	
		10억 미만	16점	
		30억 미만	12점	
		50억 미만	8점	
		50억 이상	4점	

② 상시 종업원 수 : 종업원 수가 적은 소기업 우선

항 목			점수	비 고
상시 종업원 수	제조업	5명 미만	20점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기준
		10명 미만	16점	
		30명 미만	12점	
		50명 미만	8점	
		50명 이상	4점	
	비제조업	10명 미만	20점	
		20명 미만	16점	
		30명 미만	12점	
		40명 미만	8점	
		40명 이상	4점	

③ 업 력 : 업력이 오래된 기업 우선

항 목		점수	비 고
업 력	15년 이상	20점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 기준
	10년 이상	16점	
	5년 이상	12점	
	3년 이상	8점	
	3년 미만	4점	

④ 자금사용 횟수 : 자금수혜 신규 기업 우선

항 목		점수	비 고
2002. 7. 1이후 경영안정자금 수혜 횟수	신규	20점	
	1회	16점	
	2회	12점	
	3회	8점	
	4회 이상	4점	

⑤ 재무 건전성 :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 우선

항 목		점수	비 고
부채비율	평균부채비율 이하	10점	※ 제조업 용자제한 부채비율표 (중기부소관 정책자금지원 적용기준 준용) ※ 신규기업은 최하점
	평균부채비율과 제한부채비율평균값의 평균값 이하	7점	
	평균부채비율과 제한부채비율평균값의 평균값 초과	5점	

⑥ 일자리 창출 : 근로자 고용신장 기업 보상

항 목		점수	비 고
일자리 창출비율	일자리 창출 비율 5% 이상	10점	※ 최근 3년평균 일자리 창출비율(창업 3년 이내 기업은 2년 기준 비율로 산정, 신규기업은 최하점)
	일자리 창출 비율 3%~5% 미만	7점	
	일자리 창출 비율 3% 미만	5점	

2. 가 점 (20점)

① 인 증

항 목	점수	비 고
벤처기업	4점	신청일 현재 인증기간 내
INNO-BIZ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② 수 상

항 목	점수	비 고
글로벌스타벤처	4점	스타벤처 선정기간 내
대통령상	4점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법인 및 대표자명의로 한함)
국무총리상, 장관상, 광역자치단체장상	3점	
기초자치단체장상	2점	

③ 우 대

항 목	점수	비 고
가족친화기업	4점	가족친화기업 인증서 확인
장애인기업		대표자 장애인증명서 확인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증(한국여성경제인협회)
창업보육시설 입주업체		본사가 보육입주 기관 내 소재
일자리창출비율 30%이상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최근 3년분 제출기업만 해당)

④ 지적재산권

항 목	점수	비 고
지적재산권 (특허보유 건수)	4건 이상	※ 국내/해외 포함, 이전 완료된 기술은 제외 - 특허 등록기준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⑤ 사회공헌도

항 목	점수	비 고
메세나 운동 참여 불우이웃 돕기, 기부 등	4점	매출액의 0.2 % 초과
	3점	매출액의 0.2 % 이하
	2점	매출액의 0.1 % 이하
	1점	매출액의 0.05% 이하